제 6 장
연 금

사이타마현의 마스코트 코바톤

1 국민연금
2 후생연금보험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의 2 종류가 있으며, 고령이나 장애, 사망 등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5 세 이상이 된 후로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이외에,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만일 일가의 생계를 지탱하는 자가 사망했을 때에 남은 가족은 유가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보험은 일정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가입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같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

1 국민연금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사람이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신청은 시(사이타마시는 구), 정촌의 국민연금담당창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국민연금 가입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일정기간 지불한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급부를 참조)

(1)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자 전원이 같은 금액입니다. 일본연금기구에서 보험료 납부서를 보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금액을 납입합니다.

수입이 적은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2) 급부

① 다음의 각 기초연금이 일정의 요건 하에 지급됩니다.

• 노령기초연금

자격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등)이 원칙적으로 10 년 이상인 경우, 65 세가 되었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장애 상태가 된 경우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낸 기간이나 면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의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장애인정일(20 세가 됐을 때 또는 초진일로부터 1 년 6 개월이 경과한 날)에 정해진 장애에 해당될 때 지급됩니다.

• 유족기초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의 자격기간을 채운 사람(단, 보험료 납부완료 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및 합산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 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하던 자녀를 둔 배우자(2014 년 4 월 1 일 개정) 또는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의 자녀는 18 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20 세까지. 단, 혼인 중인 경우를 제외)

② 기타 급부

• 미망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면제기간을 포함해 10 년 이상인 남편이, 노령기초연금 내지 장해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10 년 이상 혼인 관계가 계속되어 그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아내에게 60 세부터 65 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 사망 일시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6 개월 이상인 사람이, 노령기초연금 내지 장해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생계를 함께 해 온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3) 탈퇴일시금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을 출국하여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 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납부기간에 상당하는 탈퇴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의 제 1 호 피보험자로서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6 개월 이상 된 사람
- 일본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

-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연금 (장애수당금을 포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적이 없는 사람
  ※ 일본과 연금통산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의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분은, 일정요건 하에 연금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일본 및 협정상대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수속을 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 출국 전에 연금사무소 또는 시청(사이타마시는 구청)/관청사무소에서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를 받습니다.
- 원칙적으로 출국 후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에 기입해, 필요서류와 함께 하기의 일본연금기구 본부에 보냅니다.

＜보내실 곳＞

일본연금기구 본부 〒168-8505 도쿄도 스기나미구 다카이도니시 3-5-24

2 후생연금보험

사회보험의 적용사업소에서 정해진 시간 및 일수 이상 근무하는 70 세 미만의 사람은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적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60 세 이상인 사람은 보수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경우가 있습니다.

(1) 보험료

보험료는 급료(수당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를 기본으로 결정된 표준보수 월액, 상여를 기준으로 결정된 표준상여액 각각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쌍방이 절반씩 지불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급료, 상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보험급부

- 노령후생연금

노령기초연금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후생연금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65 세부터 노령기초연금에 더해서 지급됩니다. (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에 따라 65 세가 되기 전부터 지급됩니다)

- 장애후생연금

후생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장애기초연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 유가족후생연금

후생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의 자격기간을 채운 사람(단, 보험료납부완료기간・보험료 면제기간 및 합산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 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해 온 다음과 같은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하기 1 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가족기초연금도 지급됩니다.)

1 자녀 ※를 둔 배우자(남편의 경우 사망당시 55 세 이상, 지금개시 60 세부터), 또는 자녀※

2 자녀가 없는 배우자(남편의 경우 사망당시 55 세 이상, 지금개시 60 세부터)

3 손자※

4 부모, 조부모 (사망당시 55 세이상, 지급 개시는 60 세부터)

※ 자녀 및 손자는 18 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0 세까지가 대상. 단, 혼인 중인 경우를 제외.

(3) 탈퇴일시금

조건이나 수속은 국민연금의 경우와 동일하나,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에는 20.42%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귀국 전에 「소득세 및 소비세 납세관리인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환부신고 수속을 하는 것으로 징수된 소득세를 환부 받을 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담창구·문의처

＜상담창구접수시간＞
월요일 8:30~19:00 ※공휴일의 경우, 주의 첫 개소일
화~금요일 8:30~17:15
제 2 토요일 9:30~16:00

명 칭	전화번호	소 재 지
우라와 연금사무소	048-831-1638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기타우라와 5-5-1
우라와 연금사무소 가와구치 분실	048-227-2362	가와구치시 혼마치 4-1-8 가와구치센터 빌딩13층
오미야 연금사무소	048-652-3399	사이타마시 기타구 미야하라초 4-19-9
구마가야 연금사무소	048-522-5012	구마가야시 사쿠라기초 1-93
구마가야 연금사무소 카조분실	0480-62-8061	카조시 미츠마타 2-1-1 카조시청 2층
가와고에 연금사무소	049-242-2657	가와고에시 와키타혼마치 8-1 U-PLACE 5층
도코로자와 연금사무소	04-2998-0170	도코로자와시 가미야스마츠 1152-1
가스카베 연금사무소	048-737-7112	가스카베시 주오 1-52-1 가스카베 센트럴빌딩 4층,6층
고시가야 연금사무소	048-960-1190	고시가야시 야요이초 16-1 고시가야 트윈시티 B시티 3층

치치부 연금사무소	0494-27-6560	치치부시 우에노마치 13-28

※분실에서는 주 초의 개소연장상담 및 제 2 토요일의 개소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연금상담, 수속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약하십시오.

☎ 예약신청 전용전화 0570-05-4890 월~금(평일) 8:30~17:15